

EU의 사회적 분류체계와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정 환 수 (hsjung@kdb.co.kr)
이 상 훈 (raining_q@naver.com)

- ◆ EU 집행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판별하는 수단인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의 초안을 발표함
- ◆ EU는 사회적 분류체계의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동향에 따라 국내 사회적 가치 지표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함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사회 분야로 확장시킨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21.7월)

* EU 분류체계 개발 등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EU 집행위의 전문가 그룹인 지속가능금융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에서 작성

- EU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고자 '지속가능 금융 10대 액션플랜'을 제시('18.3월)하고, 제도적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제안, 입법화하였음('20.7월)
- 기존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만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판별 수단을 추가할 필요
 -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SDGs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친사회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
- *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정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채택한 31개의 원칙('20.11월)
- EU 분류체계가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분류체계는 친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친사회적인 것으로 표방하는 이른바 '소셜워싱(social washing)'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EU의 사회적 분류체계는 어떠한 기업의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정의·판별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경제활동의 분류기준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이원화함

- 수직적 차원은 기업의 사회적 경제활동 결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서비스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 수평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근로자,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사회적 분류체계 판단조건으로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SC)'와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을 제시함
- 수직적 차원은 '하나 이상의 사회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SC)', 수평적 차원은 '다른 사회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을 중점적으로 판단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매트릭스

분류	목표	세부 목표	사례
수직적	적절한 생활 수준 향상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물, 음식,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통, 통신·인터넷, 친환경 에너지, 금융의 포용성
수평적	경제활동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긍정적 영향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	사회적 대화, 차별 근절, 아동노역 및 강제노역 금지, 고용조건 개선, 건강과 안전, 기술숙련 및 평생교육
		소비자 이익 증진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강화, 사이버 보안, 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책임있는 마케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평등하고 포용적인 성장, 주거와 생계권 지원, 결사와 표현의 자유, 인권과 시민 공간 보호

자료: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21.7월), "Draft Report by Subgroup 4: Social Taxonomy"

□ EU가 제시한 사회적 분류체계는 아직 초안 단계로 세부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입법 추진 동향에 따라 국내 사회적 가치 지표 수립 등에 활용 가능

- EU의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은 이번에 제시한 사회적 분류체계 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보고서 초안은 단체교섭권, 임금 등 국가별 상이한 사회규범 및 제도로 인해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함

- UN SDG 협회*는 DNSH의 세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사회적 분류체계가 기업의 영리 추구 목적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제시

*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SDGs for the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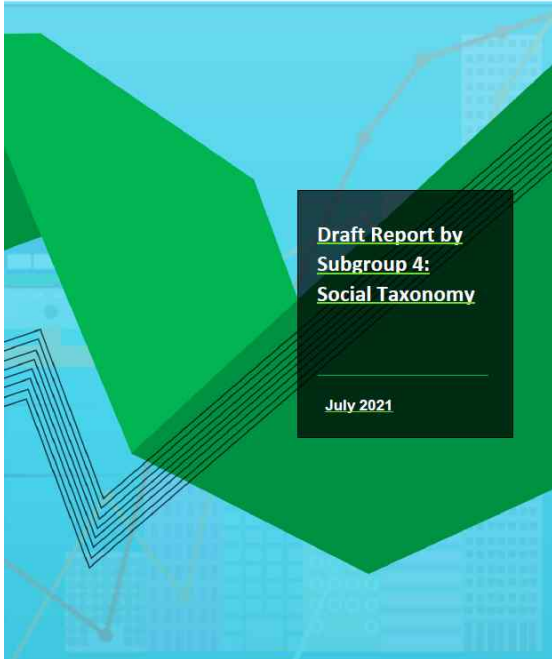
- 국내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적격 프로젝트 선정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
 - 정부는 사회적 채권의 투자지표 명확화를 위해 EU의 사회적 분류체계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내년중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 또한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목표·실행·보고 관점에서 체계화한 '사회적 가치 지표 풀' 구축도 추진 중임

'사회적 가치 지표 풀' 예시

① 목표		② 실행 원칙		③ 지표	
사회적 가치	SDGs	주제	출처	세부 내용	출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노동 관행	ISO 26000 6.4.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근로자의 인원 수 및 비율	GRI 401-1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GRI 401-3

자료 : 관계부처합동(21.8월),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 참고 :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의 사회적 분류체계 초안 보고서 요약 >



처음부터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은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의 핵심이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과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제3조)에서 구상된 사회적 내부 시장의 실현을 위한 사회 투자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GP)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에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투자자들은 사회적 투자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징후도 많다. 따라서 친환경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투자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사회권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과 이와 관련한 행동 계획(Action Plan),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EU기본권헌장(EU Charter on Fundamental Rights) 및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같은 EU의 기본 문서는 사회적 분류체계에 대한 강력한 기반과 영감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적 문제가 EU 수준이 아닌 회원국 수준과 사회적 파트너 사이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사회권 기본축(Social Pillar)은 보다 집단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한 국제 규정을 따르는 것은 국제 시장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 EU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의 사회적 분류체계 관련 하위그룹(subgroup4)의 첫 번째 과제는 다음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분류체계를 위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1. 상당한 사회적 기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어떠한 활동이 해로운가

또한 이 그룹은 사회적 분류체계와, 환경적 분류체계, 그리고 규제 환경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요청 받았으며 사회적 분류체계와 환경적 분류체계 사이의 네 가지 주요 차이점을 확인했다.

1.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활동은 사회적·본질적으로 이롭다. 사회적 분류체계는 이러한 본질적인 편익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같은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을 구별해야 한다.

2. 환경적 분류체계의 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만, 사회적 분류체계는 국제인권장전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표준에 기초할 수 있다.
3. 환경적 분류체계는 기준들과 경제활동을 연계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조세 투명성과 같은 일부 사회적 측면은 특정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항목들은 경제 주체(entity)와 연계되어야 한다.
4. 일부 사회주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량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분류체계의 구조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의미하는데, 수직적 차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와 기본적 경제 인프라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사회적 목표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서비스와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평적 측면은 밸류체인(value chain)상의 근로자, 소비자 및 지역공동체 등 경제활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수평적 목표에는 사회적 분류체계의 일부로써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업활동 수준의 기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경제 주체의 환경적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분야는 뇌물, 세금, 로비 등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은 환경적 분류체계와 사회적 분류체계 사이의 관계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한 가지 제안은 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안전장치(UNGPs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가 환경적 분류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며, 환경과 관련한 최소안전장치, 예를 들어 OECD 지침의 환경 부분은 사회적 분류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료: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21.7월), "Draft Report by Subgroup 4: Social Taxonomy"